

인권정보자료실  
Ic1.2.1  
4 20

40



# 북경 세계여성대회 보고회

일시 · 1995년 10월 6일 오후 2시~5시 30분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기자회견장)  
 주최 · 한국여성NGO위원회  
 후원 · 정무장관(제2)실, UNDP

138-020 서울 · 중곡구 밑이동 41-3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 TBH · 423-5356 FAX · 423-5356

한국여성NGO위원회

여성들의 90년대 쟁점

여성의 정치세력화

연말연시 휴일과 중 단한 연례회의의 특징

한반도의 여성들의 변화

여성들의 의회 개혁의 개발

여성들의 문화 개혁의 변화

# 북경 세계여성대회 보고회

주최 · 한국여성NGO위원회

후원 · 정무장관(제2)실, UNDP

.....  
차례

'95 북경 세계여성회의 NGO포럼 참가 보고서 /5  
정부회의 보고 /11

● 유엔 행동강령 주요부문 보고

여성의 교육 및 훈련 /23  
여성과 보건 /28  
여성에 대한 폭력 /31  
여성과 무력갈등 /35  
여성과 경제 /39  
여성과 권력·정책결정·여성담당 기구 /48  
여성과 미디어 /54  
여성과 환경 /57  
여자어린이 /64

● 패널토의

여성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전략 /73  
경제세력화 /79  
여성에 대한 폭력 /81  
여성과 환경분과 북경대회 참가 보고 및 향후 운동방향 /84  
평화를 위한 한국여성운동 전략 /88

● 열린마당

여성과 교육 /95  
종교와 여성 /102  
북경대회 참관기/맥 못춘 세개의 개(?) 목걸이 /109

## '95 북경 세계 여성 회의 NGO 포럼 참가 보고서

1995. 8. 30 - 9. 8.

이 연 숙 한국 NGO 위원회 공동 대표

국제연합(UN)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정하여 평등, 발전, 평화를 주제로 “제 1차 세계 여성 대회”를 멕시코 시에서 개최하고 270여 항목에 이르는 행동 강령을 결정하였다. 회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하여 UN은 “UN 여성 10년”을 선포하고 그 중간이 되는 1980년에 행동 강령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제 2차 여성 대회를 코펜하겐에서 개최하였다. 그후 10년째인 1985년에는 나이 로비에서 제 3차 회의를 열고 효과적인 여성 발전을 기할 목적으로 나이로비 여성 발전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10년간 그 이행에 최선을 다 하기로 결의하였다. 1995년 북경에서 개최한 제 4차 세계 여성 회의는 각국이 나이로비 여성 발전 미래 전략 이행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소집되었는데 그 규모가 역사상 가장 큰 4만 여명이 참여하는 정부간 회의, GO와 비 정부 기구 모임, NGO 포럼으로 발전했다.

NGO 포럼은 정부간 회의의 이해관계와 한계성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정부 기구간의 회의로서 누구나 참가 신청과 등록 절차를 마치면 참석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사전에 신청하면 어떤 활동이나 장소의 시간을 정해 주어 모임이 이뤄지는 행사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10일간 북경의 동북부에 위치한 화이로우에서 개최되었던

NGO 포럼은 지난 6월말까지 등록된 참가자가 36,000 명에 이르렀고 그중 27,000 명이 호텔 예약까지 마쳤으나 실제로 북경에 도착해서 명찰을 받아 간 참가자는 26,000 명이라고 중국의 조직 위원회가 발표했다.

화이로우는 북경에서 자동차로 한시간 반쯤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외판 소도시로서 국제회의를 치르기에는 시설과 입지가 태부족한 형편이었다. 당초에 정해졌던 회의 장소는 북경 시내의 근로자 경기장으로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이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지난 4월 뉴욕에서 있었던 NGO 포럼 준비 회의를 본 중국측 조직 위원들이 그 다양함과 자유로움 그리고 때로는 과격한 행동, 그 중에도 대만 문제와 티베트 독립 운동가들의 시위, 중국의 인권 문제 시비 등이 인구가 밀집해 있는 북경 시내에서 재현될 경우 행여 중국 인민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을 걱정하여 불과 4개월을 앞둔 갑자기 회의 장소를 무리하게 바꾸는 통에 UN측 준비 위원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 결과 참가자가 줄었다는 얘기가 있었다.

인증 박람회를 방불케 하는 전 세계 200 나라에 가까운 대표단들은 개회식에 이어 하루 평균 500차례씩, 개최 기간 중 5,000 여 회에 이르는 세미나, 워크샵, 간담회, 토론회, 패널 토의, 전문가 자문 회의, 문화 행사 등 다채롭고 폭넓은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한국은 북경 세계 여성 회의에 대비해서 지난해부터 96개 단체가 모여 북경에서 논의될 전반적인 주제를 공부하고 한국 NGO 활동 보고서를 국, 영문으로 준비하는 등 내실을 기하고 각급 문화 행사를 계획하면서 국, 내외 홍보를 위한 대변인으로 세종 대학교의 강경화 박사를 초청하였으며 대변인은 회의 기간 중 날마다 영문 보도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기자 회견을 주선하는 등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이끌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줄잡아 700여명이 참가했는데 한국 참가자들이 주최한 한국 여성 개발원의 각종 세미나, 이화 여대와 숙명 여대 여성학 학자들이 주최한 학술회의, 한국 여성 정치 문화 연구소의 "아세아 여성의 정치 세력화" 심포지엄, 한국 정치 연구소가 주최한 여성의 정치 참여 세미나, 국제 전문직 여성 클럽 세계 연맹이 주관한 경제 개발 관련 세미나, 정치단체, 종교단체, 직능 단체, 여성 단체들이 펼친 다양한 행사만도 수십 개에 달했다.

특히 전쟁 중의 인권 문제로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활동해 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국의 개별적인 행사와 지역 연대 그리고 세계적인 연계를 통해서 종일 행사를 다채롭게 꾸며 살아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증언, 녹음 테이프 대신한 고발에서 항의 시위까지 결들려 전체 참가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GO 회의로 넘어가서는 반대 없이 행동 강령에 강력하게 대책이 명기되는 성과도 얻었다. 성폭력 문제와 연결해서 성희롱 문제도 크게 부각되었는데 형편이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과는 현지에서 연대하여 성희롱을 배격하는 무언극과 캠페인도 벌였다.

화이로우 회의장이 열린 다음날은 비가 몹시 내렸다. 전반적인 행사가 맥이 빠진 분위기에서 한국 여성 문화 기획의 사물놀이 팀이 회의장 분위기 활성화와 한국 행사 홍보를 위해서 비를 철철 맞으며 두 시간 동안 사물놀이 대 행진을 떠들썩하게 해 전 회의장의 활기를 소생시키면서 취재진의 주목을 끌어 다음날 회의 본부가 발행하는 신문 1면 톱기사는 한국 여인들의 사진으로 장식됐다. 그날 우리의 현수막을 들고 함께 행진한 사람 중의 반 이상이 외국 참가자였는데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인 레이니 여사도 함께였다. 기자 인터뷰에서 그녀는 남편 입장이 괜찮겠느냐는 질문에 "대사는 남편이고 나는 정신대 문제에 한국 사람들과 뜻을 함께 하는 한 여성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다.

지역별 텐트는 우정의 텐트로 불러 날자별로 만나질씩 참가국의 문화 행사가 열려 서로 다른 나라 사이에 이해를 돕고 우의를 쌓는 행사를 계속했다. 우리 나라는 9월 1일 오후 여성 문화 기획 이해경 대표 및 단원들의 탈춤과 사물놀이, 김경란씨의 살풀이, 셋김곳에 이어 참가자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 춘 강강수월래, 안혜경씨의 가요 등 다양한 순서가 이웃 텐트의 행사를 중도에 파하고 구경꾼들이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9월 4일밤 아시아태평양 지역 문화 행사에서도 회의장의 명물로 유명해진 사물놀이의 강강수월래, 안혜경씨의 가요가 강경화 박사의 유창한 영어 해설에 힘입어 단연 돋보였다. 다음날 오후 어둑할 때까지 엮었던 한국의 날 행사는 관객도 많았지만 짜임새 있는 준비로 공연과 성희롱을 고발하는 무언극, 장애인 참가자의 소감 발표와 함께 하는 노래, 함께 추는 춤 등으로 우리 한국 여성의 다이내믹한 면모를 잘 보여주는 행사로 끝맺었다.

한국 NGO 위원회는 어려운 여성들도 북경에 초청하는 모금 행사를 위하여 천으로 된 가방과 T-셔츠 그리고 행사 배지를 만들어 팔았는데 북경에서 가장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 많은 참가자들이 부러워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NGO 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정신대 문제를 고발하는 행사로 한국과 별도로 녹화 테이프 상영을 하고 아시아와 세계적 행사에는 함께 참여해서 활동했다.

한국 여신학자 협의회와 종교 분과 위원회가 제의한 남북 여성의 만남 행사에는 필리핀에서 함께 하는 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북한 대표는 불참했으나 뜻밖에 한국 분단에 관심이 많은 10여 개국 대표들이 정원 50명 짜리 교실에 80여명이 몰려들어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미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태국, 일본 등 10여 개국의 외국인들, 한국 대표, 재일, 재미, 재독, 재캐나다, 한국 민족들이 꼭 들어차서 남북 여성의 만남을 기대했으나 북한이 불참하여 만남 대신에 월남한 언니가 행여나 북한에 사는 동생이 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안고 왔다는 얘기와 작은며느리가 큰 아들을 복에 두고 못 잊어 하다가 81세에 암에 걸려 오래 못 사실 시어머니를 위해 80넘은 노인 만이라도 남북을 내왕케 해서 모자 상봉을 주선해 달라는 호소는 한국의 분단 상황을 잘 모르던 외국인들에게 현실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국제적인 행사로는 미국의 대통령 부인 힐러리 클린턴 여사의 강연회가 초만원을 이뤄 그녀의 실력과 명성을 뒷받침했고, 회의에 참석 못하는 미안마의 인권 운동가, 아웅산 수치 여사의 연설 녹화 테이프 상영, 원로 여성 운동가 베티 프리단과 멕시코 여성 대회 당시의 UN 사무 차장 헬비 시필라 여사의 강연, 토론, 대담은 회의장의 부족한 시설과 미숙한 설비, 불편한 배치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은 견고 또 걸어서 모였다 흠뻑 땀 흘려서 열기를 뽐어 댔다. 한편 침묵 시위에서 행진, 연좌, 사물놀이에 취주악대까지 동원한 각 단체의 주장은 막힘 없이 UN 특구로 지정되어 대중 교통 시설조차 제한된 치외법권 지대, 회의장에서 온 세상의 문제점과 대책들을 거침없이 쏟아 냈다. 이 행사를 취재하는 2,000여 명의 취재진, 그들의 눈과 귀, 카메라와 컴퓨터는 취재 경쟁으로 설새없이 참가자들을 따라다녔다.

회의장의 구조는 전체의 활동 중심으로 공급할 때마다 들리는 글로벌 텐트가 한복판에, 좀더 북쪽으로 다섯 개의 큼직한 지역 텐트(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중동)가 서고 곧장 더 올라가면 월로우 클럽이라는 공사 중의 바닥만 3층까지 겨우 형상화된 회의장, 그 맞은편의 이곳에서 제일 값비싼 기계들이 그득하게 설치된 프레스 센터, 여기쯤에서 아픈 다리를 좀 쉬고 힘을 내어 좀더 가면 막다른 구석에 250개쯤의 나이론 보자기 감으로 빈약하게 둘러친 나라별, 단체별 연락 사무실과 전시장이 한 무더기의 천막 회의장과 풍선 텐트를 둘러싸고 웅기증기 몰려 있다. 다시 지역 텐트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가면 학교 건물 3개 등이 냉방 시설이나 선풍기

는 없지만 비가와도 행사는 계속할 수 있는 회의장이 있고 그 옆의 널찍한 운동장은 가득하게 놓은 철제 의자와 간이 테이블이 5~6천명 정도 소화할 수 있게 마련되어서 그 서쪽 끝에 임시로 세운 콤파스스테이지라는 대형 무대에서의 문화 행사와 공연을 바라볼 수 있다. 참가자들은 여기서 도시락을 먹었다.

더 서쪽 끝에 두 개중의 하나인 회의장 입구가 있고 그 옆에 유일한 2,000여명 수용 규모의 대회의장이 있어서 대형 행사를 계속했다. 글로벌 텐트 구내의 몇 개의 작은 건물과 둘러 있는 중형 텐트들, 그 남쪽으로 한 십리쯤 가서 본부 임원들 숙소로 쓴 호텔 두 개와 또 몇 개의 중형 회의장 그리고 죽 나가노라면 또 하나의 출입구가 있다. 우리 참가자들은 주로 두 개의 문 밖에서도 한참 떨어진 주차장에서 버스를 내려 전체 회의장과 사무실 지역 텐트들을 종일 걸어서 다녀야 했고 한밤에 숙소로 돌아가면 그대로 쓰러져 잠들곤 했다.

주최측에서 비가 안 오는 달이라서 9월로 잡은 회의 기간에 하필이면 힘들여 부스를 치장한 다음날에 폭우가 들이쳐 전시 물과 인쇄물이 망가지기도 했다. 바람을 불어넣어 세운 텐트는 무너지고 비가 새는 천막은 쓰러지기도 했다. 날씨가 더워서 땀에 젖거나 하루걸러 쏟아지는 빗속에서 젖은 옷을 입고도 참가자들은 즐기게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소기의 성과를 이룩해 냈다. 여성의 인내심과 적응력이 큰 몫을 해낸 셈이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북경 회의는 주최측인 UN과 주최국 중국은 물론 참가자들까지도 크게 성공한 행사로 치부하는 성과를 이뤘다.

중국 정부는 전 세계가 모여서 중국을 인정하고, 잘 걸러지고 재편성된 보도를 통해서 중국 인민으로서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의 두 배 이상의 호텔 요금과 4만 여명(GO 회의 참가자 15,000명 포함)이 쉴 사이 없이 지불하는 경비를 통해 경제적 소득이 짝짤했다.

UN은 20년에 걸쳐 여성의 평등, 국가의 발전, 세계의 평화를 지향하는 실적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향방을 제시할 행동 계획과 북경 선언문을 알차게 만들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참가자들은 누구나 자기가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수확해서 어떤 학자는 일년치 연구를 다 했다

는 학구파도 있었고 또 세계 여러 나라를 찾아 다녀도 만나기 힘든 세계적 지도자들과 10일 이상을 함께 하면서 소득이 컸다는 지도층이 있었는가 하면 외국어가 딸렸지만 건문이 확 터어서 이제부터 신나게 일해 볼 용기가 생겼다는 운동가들이 나름대로 회의 참가의 보람을 꼽고 있었다.

주로 다뤄진 이슈는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세력화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 폭력과 성희롱의 근절, 평화의 문제, 환경 보호 대책, 소비자 운동 등 세계 공통적인 관심사와 여성의 건강권, 낙태의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 선언에서부터 젊은 사람들을 에이즈(AIDS)로부터 보호하는 일, 종교의 횡단테러리즘 논의, 동성 연애 자의 가족 형태 인정에 대한 요구, 문맹퇴치 방안, 여자 어린이에 관한 특별한 관심 등 다양한 여성의 관심사들을 폭넓게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들이 부각되었다.

9월 4일에 개최한 GO회의는 최초로 대통령 영부인 손명순 여사가 참석하고 중국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귀빈으로 예우 받고 UNESCO가 주관한 세종 대왕 상의 시상으로 크게 언론에 보도되어 NGO 참가자들의 사기를 돋웠다.

GO 회의장 북경 선언문 심의 장에서는 노르웨이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활약하는 주한 노르웨이 대사 문드 여사를 만나 지구 가족을 실감했다.

한국 대표들은 모두가 뚝뚝 뭉쳐 신명나게 한 덩어리 되어 한 목적으로 일했고 일한 뒤의 피곤함은 뿌듯한 성취감으로 보상받았다. 특히 젊은 참가자들이 몸을 던져 문화 행사에 열중하여 빗속을 누비며 징과 팽과리 그리고 북을 쳐 대던 모습은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는 사물놀이의 신명나는 가락과 함께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이제 북경 선언문과 새로 만들어진 행동 강령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펼쳐 나갈 다음의 사업들을 시작해야 하겠다. 북경에서의 감동과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 정부회의 보고

황 인 자 정무장관(제2)실 담당관

### 1. 회의 개관

●회의명 : 유엔 제4차 세계여성회의: 평등·발전·평화를 위한 행동(United Nations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Action for Equality, Development and Peace)

●기간 및 장소 : '95. 9. 4~15, 중국 북경

●회의 목적

- 나이로비 이후 지난 10년간 각국의 여성발전 상황 평가
- 21세기 여성발전 행동강령 채택

●참가규모 : 189개국 정부대표 5,700명 등 총 13,000명 참가  
(취재언론인 3,200명, NGO참관자 4,000명 포함)

\*특별초청인사 : 세계의 여성 대통령 및 수상, 한국·미국·이집트 등 주요국 대통령 부인 등

●우리나라 대표단 : 36명

• 명예수석대표 : 대통령 부인 孫命順

- 수석 대표 : 정무장관(제2) 金長淑
- 교체수석대표 : 주중대사 黃秉泰
- 대표 : 외무부, 정무장관(제2)실 등 8개 관계부처 공무원
- 고문 : 국회의원, 전문연구기관, NGO 대표 등

## 2. 행동강령 내용

### ● 주요목차

북경선언문 (Beijing Declaration)

I. 임무의 기술 (Mission statement)

II. 세계적 구도 (Global framework)

III. 주요관심분야 (Critical areas of concern)

IV. 전략적 목표와 조치 (Strategic objectives and actions)

V. 제도적 조치 (Institutional arrangements)

VI. 재정적 조치 (Financial arrangements)

● 총 6장 362개항으로 구성. 행동강령의 前文 형태로 북경선언문 별도 포함.

● 향후 각국에서 남녀평등적 관점에서 정책적 노력이 요청되는 주요관심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행동조치 방안을 제시.

### ● 주요 관심분야(12가지)

- ① 여성과 빈곤
- ② 여성의 교육 훈련
- ③ 여성과 보건
- ④ 여성에 대한 폭력
- ⑤ 여성과 무력 갈등
- ⑥ 여성과 경제
- ⑦ 정치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성

- ⑧ 여성 담당기구
- ⑨ 여성의 인권
- ⑩ 여성과 미디어
- ⑪ 여성과 환경
- ⑫ 여자어린이(女兒)

\* 상세내용 별첨

## 3. 우리 대표단 활동

### ● 본회의 참석, 기조연설

- 한국여성발전 50년 소개, 21세기 미래의 주역으로서 여성의 정치적·경제적 권한 강조, NGO 역할 평가 등

### ● 행동강령 문안협상에 참가

- 의사규칙에 따라 행동강령 문안협상은

— 그룹별 협상 (우리는 77그룹에 참여)



— 비공식 실무협의 (Informal consultations)



— 공식 실무협의 (Contact Groups)



— 실무위원회 (Working Group I & II)



— 주위원회 (Main Committee)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Plenary)에서 마지막날 최종 채택.

### ● 행동강령에 우리 관심사항 반영

- 女兒의 지위향상에 있어서 가족(family)의 역할 조항 제안, 채택됨.



- 미디어(media)의 성차별적 요소 개선 필요성 지적, 주요관심분야의 하나로 미디어 포함.
  - 성폭력, 정책결정, 여성 담당기구 등 분야의 구체적 행동조치 제안
  - 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필요
  -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full and equal participation 확보
  - 여성 담당기구의 행동강령 모니터 기능 및 여성관련 기구, 단체, 연구기관 간 네트워킹 중요
  - 여성의 인권 증진 관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과 법률문해사업 실시 등 제안
  - 여성관련 통계 개발,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평가 필요성 강조 등
- 세계문맹퇴치의 날(9.8) 기념 특별연설 및 세종대왕상 시상
- 세계각국 여성지도자 및 중국의 정상급 고위인사와 개별 회동
- 유엔기구 특별프로그램에 참가
    - 유네스코 주최 여성과 교육에 관한 패널토의
    - UNICEF/UNIFEM 공동주최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패널토의 등
- IPU주관 국회의원의 날 (9.7) 기념행사 참석
- NGO 포럼 참관
- 국가보고서 등 자료 배포
    - Women : Vision of Korea  
(National Report to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 회의 관련 공식, 비공식 자료 수집
    - 주요자료 예
    - THE WORLD'S WOMEN 1995 : Trends and Statistics,  
United Nations , New York, 1995
    - WOMEN IN A CHANGING GLOBAL ECONOMY : 1994 World Survey on the Role of

- Women in Development, United Nations, New York, 1995
- HUMAN DEVELOPMENT REPORT 1995, UNDP,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Human Rights Fact Sheets, Centre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1995
- No.22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
- No.23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Affecting the Health of Women and Children
- WOMEN IN PARLIAMENTS 1945-1995 : A World Statistical Survey, Inter-Parliamentary Union, Geneva, 1995

#### 4. 향후 후속조치

- 행동강령 번역·배포 및 국내이행 계획 수립
    - 현재 여성개발원에서 작업 추진중
    - 우리의 여성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주요관심 분야를 조정
  - \* 행동강령 영문은 정무장관(제2)실에서 북경회의 직후 자료집으로 발간하였음.
- 후속 관련 주요 국제회의 유치
    - 유엔 전문가 회의
      - '95. 12. 4 ~ 8, 여성개발원
      - 주 제 : 가정과 일의 조화 - 자녀양육과 노인부양문제 등
      - 정무2장관실, 유엔 여성지위향상국 공동주최
    - 아·태 여성담당 국가기구 회의
      - '96. 9월경, 여성개발원
      - 정무2장관실, ESCAP 공동주최
- \* 여성개발 국제포럼('95.11.2, 여성공동의 장)  
동아시아 여성포럼('96. 상반기, 서울)

## ■ 별첨 : 행동강령 상세내용

### 〈선언문 요지〉

북경 선언문은 나이로비 여성발전 전략의 이행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평등·발전·평화를 위한 행동강령의 이행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또한 빈곤과 개발, 여성의 인권, 인류의 평화 등 전략적 주요관심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 향상 및 권한 증대(advancement and empowerment of women)에 대한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의지의 실천에는 시민사회 특히 여성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 1. 임무의 기술

행동강령이 지향하는 바, 상위목표인 임무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여성의 권한 증대를 위한 의제(agenda for women's empowerment)이다. ... 행동강령은 나이로비 전략 이행을 가속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 모든 인권과 모든 여성의 생애주기를 통한 기본적 자유를 증진·보호하고자 한다. ... 행동강령은 평등의 원칙과 남녀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한다... 행동강령은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실천의지를 요청한다...”

### 2. 세계적 구도

나이로비 전략이 채택된 이래 지난 10년간 세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재편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구도와 질서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세기를 향한 새로운 여성발전 전략인 행동강령이 채택되는 배경을 이룬다.

행동강령의 기반은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나이로비 전략이며 특히 '90년대 들어 유엔이 주관한 각종 세계회의의 성과도 행동강령의 배경이 된다.

### 3. 주요 관심분야

향후 5년간 각국이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주요 관심분야로 다음 12가지 분야가 선정되었다.

- ①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빈곤의 부담
- ②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불평등과 부적절함
- ③보건에 있어서 불평등과 부적절함

- ④여성에 대한 폭력
- ⑤무력갈등 상황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 ⑥경제구조와 정책에 있어서 불평등
- ⑦정치 및 정책 결정에 있어서 불평등
- ⑧여성담당기구의 미약
- ⑨여성의 인권 존중 결여
- ⑩미디어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및 미디어에 있어서 불평등
- ⑪자연자원 관리와 환경보존에 있어서 불평등
- ⑫여자어린이에 대한 차별 및 권리 침해

### 4. 전략적 목표와 조치

12개 주요 관심분야별로 전략적 목표와 이에 따른 행동조치 방안을 정부, 민간단체, 유엔, 국제기구 등 각 행동주체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면관계상 분야별 목표만 간략히 소개한다.

#### ①여성과 빈곤

- 빈곤여성의 요구와 노력을 지원하도록 거시경제정책과 개발전략 검토·채택·유지
- 경제자원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및 접근을 보장하도록 법률 및 행정관행 개선
- 금융에 대한 여성의 접근 배려
- 여성의 빈곤과 관련, 성(性)에 기초한 방법론 개발 및 연구 수행

#### ②여성의 교육 훈련

-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
- 여성의 문맹 퇴치
- 직업훈련, 과학기술, 평생교육에 대한 여성의 접근 증진
- 비차별적인 교육훈련 개발
- 교육개혁 이행에 관한 재원 할당 및 모니터
-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훈련 촉진

#### ③여성과 보건

- 생애주기를 통해 양질의 적절한 보건 및 관련정보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접근 증진
- 여성보건을 증진하는 예방프로그램 강화
- 성병, 에이즈 등 성 보건관련 사업 착수

- 여성보건에 관한 연구 촉진 및 정보 유포
- 여성보건 관련 재원 증대 및 후속 모니터
- ④ 여성에 대한 폭력
  -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 강구
  - 성폭력의 원인과 결과 및 예방 대책의 효과에 관하여 연구
  - 여성 인신매매 근절 및 윤락행위·인신매매로 인한 폭력의 피해자 지원
- ⑤ 여성과 무력갈등
  - 갈등해결과정에 여성의 참여 증대 및 외국 점령하 무력갈등 상황의 여성 보호
  - 과도한 군사비 감축 및 군비 통제
  - 갈등 해결의 비폭력적 방법을 촉진하고 갈등상황하 인권유린 사례 감소
  - 평화의 문화 조성에 여성의 기여 증진
  - 난민여성에게 보호 지원 및 훈련 제공
  - 식민지 및 비자치지역 여성에 대한 지원 제공
- ⑥ 여성과 경제
  - 여성의 경제적 권리 및 독립 촉진
  - 자원, 고용, 시장, 무역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접근 촉진
  - 저소득 여성에게 사업편의, 훈련 및 시장, 정보, 기술에의 접근 제공
  - 여성의 경제적 역량 및 상업 네트워크 강화
  - 직업분리 및 모든 형태의 고용차별 철폐
  - 직장가정의 조화 증진
- ⑦ 정치 및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성
  - 정치 및 정책결정에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 강구
  - 여성의 정책결정에의 참여 역량 및 리더쉽 증진
- ⑧ 여성담당 기구
  - 여성담당 기구 설치 또는 강화
  - 입법, 공공정책, 시책사업에 있어서 남녀평등적 관점 통합
  - 성별 통계 및 기획평가 정보 생산 및 유포
- ⑨ 여성의 인권
  -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관련 국제법 이행을 통한 여성의 인권증진 및 보호
  - 법 및 관습상 평등 보장

- 법률문제 달성
- ⑩ 여성과 미디어
  - 미디어 및 신통신기술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와 접근 증진
  - 미디어의 여성에 대한 균형된 이미지 증진
- ⑪ 여성과 환경
  -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
  -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및 사업에 남녀평등적 관점 통합
  - 개발과 환경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구의 강화 또는 설치
- ⑫ 여자어린이(女兒)
  -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 여아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와 관습 타파
  - 여아의 권리 증진·보호 및 여아의 요구와 잠재력에 대한 인식 제고
  - 교육·훈련에 있어서 여아차별 철폐
  - 보건·영양상 여아차별 철폐
  - 아동근로의 경제적 착취 근절 및 근로소년 보호
  - 여아에 대한 폭력 근절
  - 사회·경제·정치적 활동 참여에 대한 여아의 인식 증대
  - 여아의 지위향상을 위한 가정의 역할 강화

### 5. 제도적 조치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각국 차원에서 여성담당 기구의 강화 및 비정부기구 특히 여성단체의 역할증진이 요청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 등 지역기구의 여성관련 부서의 강화가, 국제적 차원에서는 유엔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여성지위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여성지위향상국 등 유엔 관련기구의 효율적 기능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 6. 재정적 조치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재정적 조치로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각기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선진국은 GNP의 0.7%를 개도국을 위한 대외개발원조(ODA)에, 또한 ODA의 20%, 국가예산의 20%를 사회개발에 할당함에 있어서 남녀평등적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유엔 행동가령

여성의 교육 및 훈련

여성과 보건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무력갈등

여성과 경제

여성과 권력 · 정책 결정 · 여성담당기구

여성과 미디어

여성과 환경

여자어린이

행동강령

## 여성의 교육 및 훈련

박정희 전 서울YWCA 회장

본 보고서는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UN 행동강령안 중 교육 및 훈련 분야의 기본적 방향과 구체적 전략을 소개하고 한국의 여성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검토한다.

### 1. 행동강령안의 기본 방향

1) 교육은 인간권리의 한 차원이며 평등, 발전,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없는 교육은 남성과 여성의 보다 평등한 관계의 형성에 기여하며 이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이익이 된다. 여성이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교육기회와 학업성취의 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과거와 비교하면 여성의 학교교육의 접근은 상당히 향상되었지만 초등교육을 제외하고 중등, 고등교육의 접근에 있어 현저한 성별 격차가 나타난다. 또한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10억의 어린이 중 6억 인구가 여아이며 96억 성인문맹자의 3분의 2가 여성이다.

3) 소녀들이 학교교육의 기회접근에서 차별을 받는 요인으로 관습적 태도, 조혼, 이른 나이의 임신, 부적절하고 성편견적인 교수와 교육자료, 성적 희롱, 학교시설의 부적절함 등을 들 수 있다. 소녀들은 어린 나이부터 힘든 가사일을 수행해야 한다. 그들은 교육과 가사의 영역에서 책임

감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학업성취가 저조하고 학교에서 중도탈락한다.

4) 양성에게 도덕적, 정신적 가치를 고무하는 건전한 교육적, 사회적 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불평등한 양성관계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5) 여성은 학령기를 지나서도 지속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의 혜택을 받아야하며 이것이 평생 학습의 개념이다. 평생학습은 형식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비형식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6) 커리큘럼과 교수자료들은 여전히 성편견적이며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며 여성이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파트너쉽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부정한다. 교육자들의 성에 대한 인식부족은 불평등한 남녀관계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며 여학생의 자존감을 손상시킨다.

7) 과학 교육과정은 특히 성편견적이다. 과학교과서는 여성의 일상경험과 관련되고 있지 않으며 여성과학자들에 대한 인식도 결여되어 있다. 여학생들은 일상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고 취업 기회를 가져오는 수학, 과학의 기초교육, 기술훈련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여성들이 산업기술사회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8) 고등교육과 모든 학문적 영역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은 전문적 활동의 지속적인 진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한정된 학문적 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9) 대중매체는 교육의 강력한 수단이 된다. 컴퓨터화된 교육과 정보체제는 지식의 학습 및 전파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대중매체는 여성에 대한 태도, 가치, 인식 형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이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적 판단과 분석적 기술을 가르쳐야한다.

10) 여성을 위해 교육에 할당되는 자원들은 불충분하다. 불충분한 자원의 할당은 인간발전 특히 여성발전에 역행하는 효과를 가진다.

k) 정부와 다른 기관들은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의 결정에 있어 양성평등이라는 관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고무해야 한다.

## 2. 행동강령안의 전략적 목표

### 1) 전략적 목표 1: 교육기회 균등의 실현(정부주도)

a. 2000년: 초등교육에 있어 해당연령인구 80% 취학

2005년: 초등, 중등수준의 교육기회에 있어 성별격차가 해소

2015년: 초등교육의 100% 취학

- b. 고등교육에 있어 성별 불평등을 해소
- c. 성을 고려한 교육체제(gender-sensitive educational system): 교육과 훈련기회에 있어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행정과 정책결정의 여성참여
- d. 가정의 노동에 종사하거나 조혼한 여성을 학교교육에 유인하기 위한 재정적, 정책적 배려
- e. 여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예 : 학문적, 기술공학적 영역)에 대한 교육

### 2) 전략적 목표 2: 2000년까지(전세계) 여성 문맹의 퇴치

(정부, 국가기구, 국제기구, 민간조직주도)

- a. 농촌여성, 이민여성, 난민여성, 이혼 및 별거한 여성, 무능력한 여성들의 문맹퇴치에 역점
- b. 기초교육(읽기, 쓰기, 셈하기)과 기능적 식자교육에 있어 성별격차의 해소
- c. 개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를 줄임
- d. 식자교육 정의의 확장: 기초교육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기술, 과학적, 기술공학적 지식과 노동까지 포함

### 3) 전략적 목표 3: 여성의 직업훈련, 과학, 기술공학, 계속교육에 대한 접근의 향상

(고용주, 노동자, 노동조합, 국가조직, 민간조직과 정부의 협력)

- a.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처하는 기술을 획득하여 여성들의 고용기회를 향상
- b. 여성의 직업훈련, 기술훈련영역의 다양화 - 과학, 수학, 엔지니어링, 환경과학, 기술공학, 정보기술, 첨단과학, 행정등
- c.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기술공학, 과학적 영역의 참여를 고무한 커리큘럼, 교수자료의 개발

### 4) 전략적 목표 4: 성차별이 없는 교육과 훈련의 개발

(정부, 교육부, 교육연구기관 주도)

- a. 성별 정형화를 지양한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보조물의 개발과 교사훈련
- b.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지위, 역할, 기여에 대한 인식을 일깨움으로써 남녀간의 평등, 협동, 상호존중의 실현. 특히 남학생의 가사기술의 획득, 가정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의 공유

- c. 여교사의 남교사와 동등한 지위와 기회의 획득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참여
- d. 대학원 수준에서 여성학 연구: 교육과정 개발, 교과서, 교사훈련의 학문적 기초의 제공
- e. 농촌여성을 위한 사회교육(non-formal education): 건강, 소규모 사업, 농업, 법적 권리와 관련한 자신의 가능성을 인식

**5) 전략적 목표 5: 교육개혁과 모니터의 실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의 할당**

(정부, 세계개발기구, UNESCO주도)

- a. 기초교육을 위한 재정의 확대
- b. 교육개혁 실천을 확인하는 모니터 체제의 확립
- c. 정부 및 민간을 총망라한 기관, 조직, 연구기관의 기금의 동원
- d. 여학생을 위한 수학, 과학, 컴퓨터 기술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에 필요한 기금의 공급

**6) 전략적 목표 6: 여성을 위한 평생교육의 촉진**

(정부, 교육기관, 지역사회주도)

- a.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획득
- b. 여성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자녀양육과 다른 서비스를 지원
- c. 여성이 모든 생애단계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융통성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 행동강령안의 시사점**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교육분야의 행동강령안은 '기회균등의 관점'(equal opportunity approach)에 기초하고 있다. 즉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맥락안에서 여성교육의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회균등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며 행동강령안에서도 이 특징적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다. 첫째, 여성교육 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교육기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전략의 주된 방향은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데 있다. 행동강령안의 기본적인 틀은 여성에게 교육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일이다.

둘째, 교육에서 나타나는 성별격차는 교육학적인 문제(pedagogical problem)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성중립적인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자료, 교사훈련을 통해 성별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

세째, 성차별적인 교육을 해결하는 방식을 개인의 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차별적 교육의 원인은 성별정형화에 기초한 성역할사회화라고 보고 교육을 통한 개인의 태도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행동강령안에서 제시된 부모, 교사, 고용주의 의식변화를 예로 들 수 있다.

네째,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대립적·적대적 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협력과 화합의 관계로 보며 성평등 실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바람직한 사회이다. 교육을 통해서 정형화된 성역할을 지양하고 양성의 역할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행동강령안에서 제시된 기본적 방향과 구체적 전략을 한국 여성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검토해보면 먼저 한국의 경우, 형식적인 교육기회에 있어 남녀평등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여성개발원(1994)의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에 의하면 초등, 중등교육에 있어 성별격차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93년 현재 취학률에 있어 초등교육은 100%, 중학교는 96%, 고등학교 90%로 남녀 모두 높은 교육수준을 나타내며 남녀격차도 거의 없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취학률은 남녀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여자의 취학률은 29.9%로 남자의 취학률 57.9%의 절반수준이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의 다수가 특정한 영역의 전공, 예를 들면 어문학, 사범계열, 예술계열에 한정되고 자연과학, 공학과 같은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여학생의 편중된 전공은 졸업후 취업기회에서 불리할 뿐아니라 성별직업분리(sex-segregated occupation)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즉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의 교육적 성취가 사회적 성취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행동강령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을 수학, 과학, 기술공학과 같은 남성 지배적 영역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전략은 한국의 여성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전략에 기초하여 중고등학교 수준에서부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행동강령

# 여성과 보건

최영희 대한간호협회 회장

제 4차 북경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방면에서 여성의 실제적 권한 확보와 남녀평등에 이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세계여성운동사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분야에서는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확대를 추구하고, 경제분야에서도 단순한 고용촉진 문제를 벗어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수립 및 생산과정에서의 남녀평등 방안이 제시되었다. 가족관계에서도 여성의 상속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안과 실천방안이 강구되었다.

또한 여성문제가 더이상 주변적 부수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중심주제임을 확인한 것도 큰 성과이다. 즉 각종 국제 회의에서처럼 여성문제가 환경, 인구, 아동, 인권 사회개발 등의 주제속에 등장하는 부분적인 의제가 아니라 여성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제반분야가 종합적으로 조명됨으로써 앞으로는 여성문제가 모든 분야에서 주된 안건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性)을 표기하는데 있어서는 생물학적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의미가 강한 섹스(Sex) 대신 대등한 남녀 관계의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젠더(Gender)로 합의 됐다. 평등의 개념에 있어서도 남녀차이의 인정을 전제로 한 형평(Equity)이라는 단어 대신 평등(Equality)이라는 단어로 남녀평등을 표현하였다.

여성보건 분야의 행동강령도 이와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 제기됐

던 여성의 생식 권리가 성생활과 임신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확보로 발전한 것은 이번회의에서 가장 성공적인 합의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여성이 임신 및 출산의 과정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종전의 수준을 넘어서 부부간의 성생활, 임신 및 출산에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성적권리' 라는 진보적인 단어를 행동강령에 넣자는 유럽측 안이 거부되고 '성적 권리' 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말로 회교국이 촉과 타협을 보았다. 즉, 여성들은 강요나 차별, 폭력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임신 출산 건강을 포함한 성생활, 제반 문제를 결정한 권리를 갖는다.(제 97조 참조) 라는 말로 용어 대신 개념을 명기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이 조항이 행동강령에 삽입됨으로써 부부와 개인은 안전하고 저렴하며 수용가능한 가족계획방법을 선택하여 자녀의 수와 터울, 임신시기를 동반자적 관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에, 자녀수에 따라 의료혜택에 차이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의 제고가 요구된다.

낙태 자유에 대한 논의는 찬성측(미국, 유럽)과 반대측(바티칸, 회교권 등)의 참여한 대립끝에 산아 제한과 여성의 보건을 위해 '낙태의 합법화' 를 주장한 유럽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낙태에 관한 행동강령은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낙태와 관련된 정책은 각국의 법률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라는 표현을 확정, 카이로 인구개발정상회의가 채택한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경우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 는 행동강령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러나 불법 낙태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은 개정하도록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10대의 성생활 및 성교육과 관련하여 부모의 책임과 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중 어디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절충안으로 타결되었다. 청소년의 성적 방종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교황청 및 이슬람 권 국가의 견해와 부모의 통제권을 부인하는 유럽연합의 견해가 팽팽히 맞섰으나 막바지 협상 끝에 청소년도 성에 관한 정보취득과 성을 누릴 권리를 인정하면서 부모의 교육의무를 명기하는 선에서 합의점을 끌어내었다.

(참고) 제 108조(e.g)요지 - 성과 임신, 출산 건강 관련 정보 및 교육에 있어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감독하는 부모의 책임과 권한도 함께 강조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여자어린이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다. 즉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여자 어린이들이 불평등한 영양 섭취, 보건 서비스를 받게 되고 여아 할례, 여아 살해등 여아는 남아보다 성적인 학대, 폭력 및 매춘에 취약하며 보호되지 않고 신체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남아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여아에 대한 가족내 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족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 95 조 참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아에 대한 차별이 시작되는 시점을 언제부터로 규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유럽측은 출산과 동시에 잡았으나 개도국 그룹은 수정됐을 때부터로 주장해 결국 '생명의 초기단계' 라는 표현으로 절충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번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몇가지를 정리해 볼때 서방국가들은, 개인의 권리를 더 중요시 하는 반면 교황청과 가톨릭 및 이슬람 국가들은 '결혼'과 '가족'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한국여성NGO보고서(북경세계여성대회를 위한 2차 심포지움)중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 여성도 최적의 건강상태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이는 남성과 평등해야 한다. 즉 여성의 건강은 생물학적 상황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비추어 볼때 한국상황에 있어서는 여성이 최적의 건강상태를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문화적 관습에 의한 남녀간의 성차에 따른 불평등으로 불행하게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는 건강과 안녕에 있어서 여성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노년기등, 여성의 전생애를 통해 건강을 이룰수 있도록 교육 사회 정책, 경제 등 다각적으로 남성과 대등한 평등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여성들 자신의 힘을 조직화 하고 세력화 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자신의 문제에 여성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 행동강령

## 여성에 대한 폭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행동강령 주요부분

113. 여성폭력은 평등, 발전, 평화에 장애이며 여성의 인권과 기본자유를 침해하거나 무용지물화 하는 것. 모든 사회에서 여성과 여아들은 수입, 계급, 문화적 배경에 관계 없이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학대를 당한다. 여성의 낮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여성폭력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114. 여성폭력의 정의 — 성에 근거한 폭력으로 신체적, 성적, 심리적, 위대한 고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하겠다고 협박, 강제, 또는 자유를 임의로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적이거나 사적인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것을 포함. 따라서 여성폭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으로 구타, 가정내에서의 여아에 대한 성적 학대, 지참금과 관련한 폭력, 아내강간, 여성음핵절제 및 기타 여성에게 해로운 전통적 관습, 비배우자 폭력 및 착취와 관련된 폭력을 포함한다.

2) 일반 사회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으로, 강간, 성적학대, 직장-교육기관, 기타 장소에서의 성희롱 및 겁주기 여성인신매매, 강제 매춘을 포함한다.

3) 국가가 자행하거나 묵인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115. 이외에도 여성폭력은 무력분쟁 상황에서의 여성의 인권 침해, 특히 살해,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강제임신을 포함한다.

118. 폭력행위나 위협은 공포와 불안을 야기시키고 평등, 발전, 평화에 장애가 된다. 희롱을 포함하여 폭력에의 공포는 여성의 이동에 장애가 되고 자원에의 접근, 기본활동에 제약을 가져온다. 여성폭력은 여성을 예측적 지위에 머물게 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다. 많은 경우 여성폭력은 가족이나 가정내에서 발생하며 이는 묵인된다. 가족이나 다른 가구 성원에 의한 여아와 여성의 유기, 신체적, 성적 학대와 강간, 배우자 및 비배우자의 학대는 신고되지 않고 따라서 알아내기 어렵다. 특히 신고되는 경우에도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19. 여성폭력은 남녀사이의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반영으로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와 차별을 가져오고 여성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 문화적 양태, 사회적 압력, 법적 보호의 미비, 폭력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교육의 부재, 미디어에서의 여성폭력의 이미지, 특히 강간이나 성노예 및 포르노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것.

120. 폭력이 없는 가족, 사회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전체적, 다각적인 접근을 해야함. 남녀간의 평등과 파트너십, 인간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사회화의 관점에서 가르쳐야 한다. 자기존중, 상호존중, 남녀간의 협동을 교육해야 한다.

### 전략적 목표 D 1. 여성폭력의 예방과 철폐를 위해 통합적 대책을 마련한다.

125. 정부가 해야할 일

a) 여성폭력을 정죄하고 여성폭력철폐선언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를 제거할 정부의 임무를 관습, 전통 및 종교적 이유를 들어 회피하는 것을 삼가야한다.

b) 여성폭력에 관련되는 것을 피하고 국내법에 따라 예방, 조사하며 여성폭력행위가 국가에 의해 자행되었던 개인이 했던 처벌하도록 한다.

c) 가정이나 직장, 동네, 사회 어디든 여성과 여아가 폭력의 대상이 될 때 이를 처벌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형법, 민법, 노동법, 행정법상의 제재를 위한 입법 및 기존법을 강화한다.

d) 여성폭력을 제거하는데 효과적하도록 법을 채택, 이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한다. 이는 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를 기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폭력의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보상과 치료, 가해자의 재활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e)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고문방지협약등을 포함하여 여성폭력에 관련된 국제적 인권규범과 규약들을 비준하고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g) 여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여성시각을 주요관점으로 채택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의 실행책임자, 즉 법집행 관리, 경찰 및 사법부, 의료 및 사회복지사, 소수민족, 이주민, 난민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여성폭력의 원인 및 결과, 패미니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원하고 여성시각이 없는 법률이나 사법부, 법운용상의 문제 때문에 여성들이 재피해를 입는 일이없도록 해야한다.

h) 폭력 피해여성들에게 국내법에 보장된 대로 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 정당하고도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킨다.

j) 여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모든 수준에서 강구하고 실행한다.

k) 남성과 여성의 사회문화적 행동양식을 고치기 위해, 그리고 양성중 어느 한 성의 열등성 및 우월성,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 등에 기반한 편견, 사회적 관습적 행동 및 기타 모든 습관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특히 교육분야에서 채택한다.

l) 여성과 여아가 폭력행위를 안전하고 비밀이 보장된 분위기,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신고하고 고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강화한다.

m) 장애인 여성이 여성폭력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126. 지방정부, 공동체 조직들, 비정부 기구들, 교육기관들, 공공 및 시설분야들, 특히 기업 및 대중매체 등은 모두 정부에 의해...

a) 폭행을 당하기 쉬운 여성과 소녀들을 위해 재정이 충분한 보호시설과 구제와 휴식을 위한 지원을 마련하고 의료 심리학적 및 기타 상담에 관한 도움을 제공해주며 생계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i) 폭행의 가해자들을 위한 상담들과 사회복귀에 관한 조항을 조성, 마련, 주도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폭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연구하는 것을 촉진하여야 한다.

127. 정부, 고용주, 노동조합, 공동체 및 청소년 기관, 비정부기관들에 의해...

a) 모든 교육기관과 직장 및 여타 장소에서 성희롱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한다.

d) 여성들, 특히 젊은 여성들, 피난민, 쫓겨난 여성들, 지체부자유여성들과 여성이주노동자 등과 같은 위협에 노출된 상황의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전략적 목표 D.3 여성매매를 근절시키고 매춘과 인신매매에 의한 여성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조치를 채택한다.**

h)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범죄자들을 형사 및 민사상의 조치들을 통해 처벌한다는 견지에서 기존의 법을 강화하고, 여성매매를 근절 시키기 위해 여성과 소녀 인신매매를 부추키는 원인들을 밝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들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젊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면서 인신매매와 섹스관광을 금하는 것을 법률화하는 것을 고려한다.

### 행동강령

## 여성과 무력갈등

권희순 정신대대책협의회 아시아연대 위원장

세계평화를 유지하고 인권, 민주주의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증진시키는 일은 폭력의 위협과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존중 하는 것이다.

상호간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여성의 진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평화없이 평등이고 발전은 없는 것이다. 무력갈등이나 다른 종류의 분쟁은 냉전이후에도 줄어들지 않았다. 침략, 종족간의 분쟁, 종교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이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여성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조직적 폭력의 상황이 세계 각처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폭력주의는 새롭게 일어나는 세계적 현상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행동강령 4장(e) 부분은 무력갈등이 여성에게 미친 영향을 다룬 행동강령이다.

평화를 증진시키고 분쟁해결을 촉진하며 무력갈등이나 다른 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6개의 전략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정부나 지역정부간의 기구나 비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 평화를 증진시키고 분쟁해결을 촉진하며 무력갈등이나 다른 분쟁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략 목표 1. 분쟁해결과 의사결정, 평화 리더쉽,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보장할 것과, 그리고 외국 점령하에 살고 있는, 혹은 다른 분쟁 하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 각 정부와 국제기구와 지역 정부간의 기구는...

- a) 모든 평화 운동과 토론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높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b) 평화유지에 관계된 문제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 기구의 모든 정책 결정수준에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하도록 여성의 수를 증가시키고 여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 c) 무력갈등이나 다른 분쟁을 해결할 때 성차별적 견해를 폐지하며 전쟁범죄재판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재판관이나 그와 유사한 지위에 필요한 사람을 배정할때 남녀의 수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이것은 전 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유엔국제법정(UN International Tribunals)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만든 기구는 물론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를 모두 포함한다.
- d) 이러한 기구들은 무력갈등 속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성폭력과 강간문제를 다루는 검찰관, 법관, 그리고 관계 직원에게 적당한 훈련을 통해서 성문제와 관계된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e) 모든 형태의 분쟁이 끝난 후 국가의 재건과 화해하는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전략목표 2. 군비삭감과 군사력 억제를 위하여

14... 각 정부는

- a) 군사자원과 관계된 산업발전을 평화 목적을 위한 산업으로 변화발전을 서둘러야 한다.
- b) 새로운 공적 그리고 사적 경제자원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방법을 창조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안정을 위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무기무역, 무기생산이나 무기수입을 위한 투자와 군비를 삭감하여 그 비용을 사회경제발전, 특히 여성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 c) 유엔에 핵무기외, 기존무기를 등록하고 더 많은 종류의 무기를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 d) 무기무역, 과도한 무기제조를 위한 투자와 무기습득이 무력 분쟁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적해야 한다. 또한 불법무기 매매, 폭력, 범죄, 불법 마약제조와 사용 및 매매, 여성과 어린이 매매 등과 싸워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 e) 핵무기와 같이 많은 파괴를 가져오는 모든 무기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략목표 3. 비폭력적 분쟁해결 방법을 증진시키고 전쟁중에 인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46. 정부는

- a) 무력분쟁중에 여성과 어린이 보호에 관해 어떤 규정이 있는 국제기구의 가입과 비준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국제무력갈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1949년 제네바 협정의 의정서인 '전쟁시 시민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포함한다.
- b) 무력분쟁 중 인도주의에 입각한 국제법의 규정을 존중해야하며 특히 강간, 강제매춘, 강제추행을 막기 위해 여성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7. 각 정부와 국제기구와 지역기구는

- a) 외국의 식민지배나 다른 형태의 외국점령하에서 모든 민족의 자기결정권을 다시 인정해야 하며 특히 세계인권대회에서 발표된 것처럼 이와 같은 권리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인식 해야 한다.
- b) 유엔에서 제시한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과 외교, 예방외교, 협상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c) 전쟁이나 종족말살의 의도적인 방법으로 조직적인 강간과 다른 형태의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여성을 취급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고 정죄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해 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
- d) 전쟁중에 행한 강간은 전쟁 범죄임과 어떤 특정한 정황 속에서의 강간은 "집단 학살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에 관한 조약" 규정에 있는 것처럼 집단학살행위임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죄임을 재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기구를 강화해야 하며 어린이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e) 무력갈등속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모든 행위를 방지하는 국제인권기구와 인도주의적 국제법이 정한 규정을 존중하고 강화해야 한다. 전쟁중에 범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모든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것은 강간, 특히 조직적 강간, 강제매춘 다른형태의 성추행, 성노예를 포함한다. 그리고 모든 책임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 f) 국제공동체가 모든형태의 폭력주의를 정죄하고 타도하도록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
- g) 전쟁중에 여성의 인권모독, 인도주의적 국제법위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경찰, 안전요원, 군인을 처벌하고 조사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략목표 4. 여성이 평화의 문화를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148. 정부, 국제기구, 지역정부간의 기구와 비정부기구는...

- a) 교육, 훈련, 공동체 활동, 젊은이들의 교환 프로그램, 특히 젊은여성들의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로운 분쟁해결, 평화, 화해, 관용을 증진시켜야 한다.
- b) 유엔 교육 10년 (1995~2004)을 위한 행동강령 실행을 재검토하고 제4차 세계여성대회 결과를 재고해야 한다. (평등, 발전, 평화를 위한 행동)
- c) 평화에 대한 연구에 여성이 참여 발전시키도록 장려해야 한다. 여성과 어린이들, 그리고 자연에 대한 무력갈등의 영향을 연구하고 국내와 더 큰 지역과 국제 평화 운동에 여성의 참여가 어떻게 기여하는지 연구해야 한다.
- d) 전쟁의 영향과 결과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되 여성, 특히 젊은여성과 여아에 대한 무력갈등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e) 비폭력, 관용의 방법으로 분쟁해결에 초점을 두는 평화문화를 육성시키기 위해 남녀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전략목표 5.**에서는 피난민과 난민여성(displaced women)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위한 제안을 담았고, **전략목표 6**은 식민지여성을 돕기위해 각정부,정부간기구와 비정부기구에 취해야 할 행동강령을 제시했다.

문단 147.의 (e), (f)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운동과 로비를 통해서 채택된 조항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전쟁중의 강간)는 전쟁범죄이며 진상규명과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일본군 위안부(Sexual slavery)문제가 이미 UN정식 문서인 '제 4차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으로 채택된 것은 우리 모든 한국여성운동의 승리이며 또한 세계여성을 위한 기여가 될 것으로 믿는다.

**행동강령**

# 여성과 경제

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국장

## 1. 여성불평등의 상황 그리고 주장

- (1) 여성은 재정, 금융, 상업 그리고 그의 경제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었거나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
- (2) 지난 10년간 여성의 공식, 비공식 노동시장에의 참여는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조건과 성불평등으로 인한 교섭력의 부족으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고 있다.
- (3) 여성은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고용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제구조 재조정에 따르는 심각한 영향을 받아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이는 숙련, 전문직여성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 (4) 생산자원에의 접근 결여, 가족에 대한 책임의 불균등 분배뿐 아니라 교육, 훈련, 고용, 임금, 승진 그리고 업무의 수평이동 과정에서의 차별은 양육문제에 따르는 시설부족문제와 결부되어 여성의 경제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다.

(5) 가사노동과 지역사회에서 무보수노동에 대한 책임감이 줄지 않은 채 노동력상의 여성비율은 계속 증가한다. 또 어느 지역에서는 여성의 기업경영, 자영업, 특별히 비공식부문에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또 많은 나라에서는 여성이 임시직, 파트타임, 계약직, 가내노동 같은 비정규 노동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6) 국내노동자는 물론 여성이민노동자는 송금을 통해서 본국에, 노동을 통해서 거주하는 나라에 경제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여성이민노동자는 거주국에서 그 나라의 노동자 그리고 남자 이민노동자에 비해 높은 실업상태에 있다.

(7) 성분석에 대한 불충분한 관심으로 인해 경제구조에서 여성은 무시되고 있다. 즉 가족과 가사뿐 아니라 금융시장과 기구, 노동시장, 경제학, 경제사회적 하부구조, 세제 그리고 사회보장체계에서 무시되고 있다. 이 결과로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남녀불평등이 계속될 것이다. 통합적 성관점상 발전이 이뤄진 곳에서는 프로그램과 정책효과가 강화되고 있다.

(8) 유엔구조나 국제노동통계에서도 특히 농업과 관련된 여성의 무보수노동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또 어린이와 노인, 가사일, 지역의 자원활동에서의 무보수노동은 국가경제에 계산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헌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9) 경제의 지구화에 따라 새로운 고용기회가 늘고있지만, 남녀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다. 동시에 경제통합을 포함한 국제화는 여성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고용소스를 찾는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경제의 지구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더 요구된다.

(10) 이 경향은 공식, 비공식 부문에서 여성의 직업적 건강과 안전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과 직업안정의 부족 그리고 낮은 기술, 열악한 노동환경, 저임금, 낮은 노동기준으로 특징지어진다.

(11) 근본적인 정치, 경제사회적인 변화가 잘 진행된 나라에서는 잘 활용만 한다면 여성의 기술은 각국에서 경제생활에 주요한 공헌할 것이다.

(12) 사적 영역에서의 고용부족 그리고 공적서비스의 감소는 여성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한 공적서비스가 이용될 수 없을 때 여성은 더 많은 무보수노동을 한다. 고용창출 전략은

여성이 우세한 부문과 직업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전통적인 남성영역에 여성접근은 쉽지 않다.

(13) 임금노동에서 여성은 성희롱 등으로 잠재력 성취에 많은 장애를 겪는다. 가족간에 양육에 대한 비협조적 환경, 비탄력적인 노동시간도 장애가 되고 있다.

(14) 여성들의 자영업, 크고 작은 규모의 기업경영과 소유가 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비공식 부문의 확장, 자영업, 자립기업의 확대는 상당부분 여성이 이룩하였다. 여성의 협동조합, 생산과 무역에서의 전통적인 실행과 자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제자원임을 보여준다.

여성이 자본, 신용과 다른 자원들, 기술과 훈련에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여성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산, 시장,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15) 경제정책에 대한 재고는 성적 관점을 통합시키고, 노동과 고용패턴에 관한 부정적인 성적 함의를 드러내줄 뿐 만아니라 기회 범위를 넓히는데 대한 관심을 끌어내는데 필요하다.

경제에 대한 남녀의 능력을 충분히 인식하기 위해 사회에서 남녀 모두가 지닌 노동, 경험, 지식 그리고 가치평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16) 경제적 잠재력과 여성자립이 논의됨에 있어 정부와 활동가들은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성관점을 주류로 하는 가시적, 적극적 정책을 증진시켜야 한다. 정책결정 전에 남녀 각각에 대한 영향을 바탕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 2. 전략 목표

**전략목표 1 : 고용, 적절한 노동조건에의 접근 그리고 경제자원 토지, 자본, 기술을 통제를 포함하여 여성의 경제 자립을 증진한다.(여성을 위한 경제적 권리를 보장한다.)**

### 채택된 행동

정부는 1) 동일가치 동일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고 강화한다.

- 2)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반대하는 법을 이행하고 적용한다.  
특히 나이든 여성노동자들, 고용과 승진, 고용보험 그리고 사회보장의 확대, 노동 조건을 고려한다.
- 3) 고용주에 의한 차별적 관행을 없애고 여성의 재생산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임신, 육아, 피임기구 사용요구를 제재하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또 여성이 임신, 육아 후에도 일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강구한다.
- 4) 국제 기구와의 참여, 재정, 무역부처, 국가경제위원회, 경제연구기관 그리고 핵심부서를 통하여 여성이 정책결정과 구조조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메카니즘을 고안하고 적극조치를 취한다.
- 5) 여성에게 남성처럼 재산, 소유권, 상속, 자연자원, 새로운 기술통제와 소유권에의 접근을 포함하여 경제자원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 법적 개혁을 이행한다.
- 6) 여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사회보장체계와 상속세, 국민 총소득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한다.
- 7) 노동과 고용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도록 하며, 특히 무보수 노동의 분배와 범위 유형을 잘 이해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양적인 면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이 국가재정과 분리되어 산출되는 것을 가능한 재고한다.
- 8)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기구운용을 통제하는 법을 재정, 개정한다.
- 9) 적절한 수준에서 예산집행을 공개적이고 공명하게 하도록 촉진한다.
- 10) 전통적 저축, 대출, 기술대여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을 시행하고 재검토한다.
- 11) 국제적, 지역적 무역협정과 관련한 국가 정책이 여성의 새롭고 전통적인 경제 행위에 반하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한다.
- 12) 초국가적 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은 환경과 관련법을 포함하여 법, 규약, 사회 보장, 적용가능한 국제조약, 기구와 회의에 따를 것을 보장한다.
- 13) 가족책임을 공유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동패턴 재조정을 촉진하는 고용정책을 조정한다.
- 14) 경제부처와 재정기구에 의해 개발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여성노동자와 여성기업인이 기여할 수 있는 메카니즘과 포름을 수립한다.
- 15) 기회균등법을 제정하고 강화한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 사부문에 의해 채택되

- 도록 적극조치를 취한다.
- 16) 여성이 기술, 기업, 경영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파트너로 권한을 갖기 위하여 성을 고려한 정책과 수단을 증진한다.
  - 17) 재조정정책과 영향이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을 감시하기 위해 거시, 미시 경제와 사회정책의 발전에 성적 영향에 관한 분석을 사용한다.
  - 18) 안전한 노동수행, 조직할 권리, 정의에의 접근을 포함하여 여성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동법의 확립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개정한다.

## 전략목표 2. 자원, 시장, 고용, 무력에 여성의 평등한 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한 적극 조치

### 채택된 행동

- 정부는 1) 여성자영업과 소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증진하며 남성과 동등하게 신용과 자본에의 접근을 강화한다.
- 2) 고용주가 남녀평등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유인 역할을 강화한다.
  - 3) 큰 기업, 소규모기업, 협력기업을 강화한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비공식부문에서 공식부문으로 이동을 촉진하고 시장과 고용기회를 확대한다.
  - 4) 식품 안전에서 여성의 활발한 역할을 강화하고 인식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정, 창조한다. 특히 농업, 어업, 양식업을 하는 여성들에 대한 적절한 기술, 수송, 반환 금연장 서비스, 시장과 신용에의 접근을 촉진한다.
  - 5) 여성협동조합이 필요한 서비스에의 접근을 완벽하게 가능할 수 있는 부문간 교류를 강화하고 적절한 메카니즘을 수립한다.
  - 6) 경제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정부관리자와 여성노동자의 비율을 높인다.
  - 7) 부문간, 정부부처간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예산에서 노동자, 자영업, 기업가의 이해와 요구를 통합시키는 정책을 수행하고 조정, 분석, 권고한다.
  - 8) 전통적 영역에 제한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배치, 상담, 재훈련, 직업훈련에 여성을 동등하게 접근시킨다.
  - 9) 강제노동, 아동노동의 금지, 연대의 자유, 단체교섭권과 조직의 권리, 동일가치동일

임금, 고용상의 차별금지를 시행하고, ILO협약을 이행한다.

사적 금융기관과 중앙은행, 국가발전은행, 정부

- 1) 여성기업가를 포함하여 여성들이 경제부처와 은행에 의해 개발되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결정과 검토에 공헌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와 다른 포럼에의 참여를 늘린다.
- 2) 여성기업가와 생산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금융부문을 가동한다.
- 3) 자본과 자산에의 접근이 결여된 토착여성, 소수인종여성, 저임금연소여성과 함께 여성기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체계화한다.
- 4) 경제하부구조를 위한 계획(물, 위생, 전력사용, 에너지보존, 수송)에 의해 여성을 우선 포함시킨다.

정부와 민간단체

시장, 무역, 자원에 대한 정보보급시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절한 훈련을 제공한다. 정부간 파트너십을 만드는 공동체적 발전 전략을 장려한다.

국제기구들

여성중, 특히 불리한 조건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 생산적 사업 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과 계획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한다.

**전략 목표 3. 저임금 여성들에게 사업서비스와 시장, 정보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채택된 행동

민간단체, 사적부문과 협력하는 정부

- 1) 남녀기업가에게 동등한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공적 기반을 제공한다.
- 2) 사업운영, 제품개발, 재정, 생산과 제품질의 조정등에서 여성에게 새로운 기술과 서

비스에 있어서 교육, 재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 3) 농촌과 가난한 여성들에게 시장과 기술에의 접근기회를 알려줄 원조계획을 마련한다.  
전통, 비전통 경제활동에 성공한 사업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성공에 필요한 기술을 선전하고 정보망형성과 정보교환을 촉진한다. 실업여성, 편모, 휴직후 재고용된 여성, 생산비 절감 때문에 해고된 여성에게 교육을 보장한다. 기업가들에게는 비전통 지역 여성에게 교육시킬 교육세터를 확장할 동기를 준다.
- 4) 일하는 남녀의 요구를 고려한 높은 질, 탄력적인 적절한 육아서비스와 같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라.

**전략목표 4. 여성의 경제능력과 상업적 연대망을 강화한다.**

채택된 행동

정부

- 1) 여성사업가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자립그룹과 그외 그룹을 후원하는 정책을 채택한다.
- 2) 경제구조 조정 정책에 성관점을 반영하고 그에 영향을 받는 여성들, 비공식부문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한다.
- 3)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여성자립그룹, 노조, 협동조합에 가능성을 부여하는 환경창출정책을 채택한다.
- 4) 여성연구 증진을 통해 특히 경제, 과학, 기술영역에서 성조사와 연구결과를 이용해 성평등을 증진한다.
- 5) 집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규정과 노동법의 보호를 확대 지속할 정책을 채택한다.
- 6) 여성과학자와 기술자에 의한 연구의 기여를 인식하고 격려한다.

초국적이고 국가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문

남성과 동등한 조건에서 지도부, 의사결정과 운영에서 여성을 채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노동, 환경, 소비자, 건강과 안전법을 준수한다.

**전략목표 5 직업적 차별과 모든종류의 고용차별을 철폐하라.**

**채택된 행동**

정부, 고용주, 피용자, 노조, 여성조직

- 1) ILO와 같은 국제 노동기준을 보장하는 자발적 행위를 장려한다.
- 2) 성적이고 인종적인 희롱에 대항하는 법적인 보호를 포함하는 법이행을 밝힌다.
- 3) 여성의 재생산 기능과 역할에 기초한 임신, 모유먹이기 책임을 이유로 여성해고와 고용기피 등 고용주의 차별적 행위를 없앤다.
- 4) 직업소개와 상담의 방법으로 특히 고도로 숙련된 일과 높은 경영지위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토록 하여 차별을 없앤다. 여성이 과학, 기술에 있어서 비전통적인 일을 채택하도록 격려하고 남성들이 사회적 부문에서 직업을 찾도록 장려한다.
- 5) 여성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다.
- 6) 노조임원선거에 여성진출을 장려하고 여성을 대표하도록 선출된 임원에게 일자리 보장과 신체적 안정을 부여, 보장한다.
- 7) 성중립적 평가기준으로 직무평가계획을 장려한다.
- 8) 임금차별에 관계된 사건을 판결할 구조를 만들고 강화한다.
- 9) 미성년노동을 없애기 위한 법을 실시하고 아동권리규약과 국제노동기준을 집행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다.
- 10) 미성년노동을 없애는 전략이 수행되지 못하는 곳에서는 집 등에서 그들에게 가해지는 과도한 무급노동에 대해 언급한다.
- 11) 이주여성의 생산적 고용을 촉진한다.

**전략목표 6. 탄력적인 노동환경을 만든다.**

**일과 가족에서 남여의 더 나은 조화**

**채택된 행동**

정부

- 1) 비정규직, 임시직, 가내노동 등을 위한 노동법의 보호와 사회보장 연금정책을 채택하고 일, 가족에 대한 책임을 조화시킬 노동조건을 기본으로 한 경력개발을 장려한다.
- 2) 양육휴가를 받는 남녀, 부모연금을 받아야 하는 남녀에게 기회를 보장한다. 법률, 격려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가족책임을 동등하게 분담하도록 한다.
- 3) 가사노동분담, 가족책임, 노동분업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위한 교육정책을 개발한다.

정부, 민간부문, 민간단체, 노조와 UN

- 1) 남녀의 일시적 휴직, 고용연금과 퇴직연금의 양도가능함, 노동시간의 변경을 위해 고용주와 피용자의 조직 그리고 관련정부부처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한다.
- 2) 성평등, 가족내 비고정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혁신적인 매체 캠페인, 학교와 공동체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제공한다. 직장내 보육시설과 탄력적 노동제도와 같은 서비스와 시설을 제공한다.
- 3) 모든 작업장에서의 성적, 그외 형태의 희롱에 대항하는 법을 제정하고 실행한다.

행동강령

## 여성과 권력, 정책결정, 여성담당기구

김 정 숙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 제 4장 G. 권력(가족 책임)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남녀불평등 (권력 공유 : 정책결정과 여성)

1. 여성 정치참여 원칙의 당위성 : 공정하고 책임있는 정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나, 남녀의 평등한 정치참여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모든 수준의 정책결정에 여성의 참여와 여성의 관점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등, 발전,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2. 미흡한 현실 : 유엔 경사리는 1995년까지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30%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전세계 여성의원의 10%만이 여성이고 장관의 수는 더 적다.
3. 저조한 여성정치참여 이유 : 그 원인은 정당, 정부구조의 전통적인 작동유형이 여성에게 불리하고, 성차별적 태도, 관습, 가족과 자녀양육책임, 공직참여와 유지비용등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들이라는 것이다.
4. 여성의 정치적 공헌 : 여성의 정치참여는 정치적 우선순위를 재정의하고, 여성의 관심사를 정치적 이슈로 부상시키며, 주요한 정치문제에 새로운 관심을 제공하는 등의 공헌을 한다.

5. 여성은 공직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비공식적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왔으나 매스미디어 등을 통한 사회화, 부정적 고정관념화는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정의해왔다. 예술, 문화, 체육, 언론, 교육, 종교 법분야에서 여성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영향력이 제한되어 왔다.

6. 그러나 여성은 한편 비정부기구 등 대안적 구조안에서 권력을 획득해 왔다.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표명하고 여성문제를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문제로 부각시켜 왔다.

7.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불평등은 가족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시작한다. 가사노동의 불평등한 분담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며, 보다 평등한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구조적 · 제도적 장애는 적극적 조치를 통해 제거되어야 한다. 정부, 다국적 기업, 언론, 은행, 연구소, 국제기구 등은 여성의 고위 간부 정책입안자, 외교관, 협상가로서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치 않고 있다.

9. 정책결정의 평등한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가 여성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정책 개발과 수행에 여성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99.9%의 여성 쿼터제가 여성의 세력화에 기여했다.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에 있어서 현존하는 데이터, 방법론 등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

### <여성정치참여확대방안>

#### 전략적 목표 G. 1.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특별조치

##### 행동강령

##### 정부는

- 정부, 각종위원회, 행정부, 사법부의 성평등의 목표를 세우고 모든 공직에서 여성의 평등 참여를 위한 특별목표를 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 정당이 여성의 평등참여를 도모하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한다.
- 남녀의 정치적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고 도모한다.
- 선거제도가 여성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제도개혁을 한다.
- 정기적으로 남녀의 정책결정참여에 관한 수량적 자료를 수집, 분석, 배포한다.
-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해 연구하는 비정부기구와 연구소를 지원한다.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와 같은 연구기관)
- 남녀의 평등한 가사분담과 가정과 직업을 조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정부출연기관, 유엔고위직 후보명단 등에 성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정당은

-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구조적 절차적 장애를 연구 제기한다.
-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 정강에 여성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고려한다.(정당고위직에 여성을 포함시킨다)

##### 정부, 민간부문, 정당, 노동조합, 연구소, 국제기구, 비정부기구는

- 정책결정지위에 일정수의 여성지도자가 포함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 사회와 가족에서의 남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범사회적으로 토론이 되도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한다.
- 진로계획, 지원, 훈련, 재훈련을 포함하는 여성의 진로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유엔

- 고위직에 여성임명을 추천하는 방법을 개발한다.
- 남녀정책결정자와 그들의 정책결정스타일의 차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배포한다. 2000년까지 여성이 50%가 되게 하는 사무국의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전략적 목표 G. 2. 여성의 정책결정참여의 리더십 능력의 향상

##### 정부, 기업, 정당, 노동조합, 국제기구의 비정부기구는 :

- 리더십의 자아개발훈련을 제공한다.
- 여성에게 지도자훈련, 정책결정, 연설과 자기주장, 정치적 캠페인에 대한 훈련을 포함한 지원체계를 수립한다.
- 비차별적인 업무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남녀에게 여성학 강좌훈련을 제공한다.
- 여성의 선거의 정치활동참여를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

#### H. 모든 수준에서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화의 부족

1.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가기구가 성립되기는 하였으나 목적 및 책임이 불분명하고, 직원이 부족하며, 훈련, 데이터, 재원의 부족, 정치지도자의 인식부족 등으로 비효율적인 곳이 많다. 정책 계획에 있어서 여성문제를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논의되었지만 잘 되어지지 않은 나라가 많다. 여성지위위원회와 성차별제거 위원회를 포함한 지역기구 등이 강화되었지만 재원부족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관련정책개발에 관한 방법론이 발전되었으나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 2.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가기구의 효율적 기능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총리 산하등 정부의 최고위 수준에 위치
- 정책수행을 위한 제도적 조치 : 비정부기구와 시민기구를 포함
- 충분한 인적 물적 차원
- 정부정책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3.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제도화의 논의에 있어 모든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이 남녀에게 각각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 <모든 정책기획과 수행과정에 성평등차원의 통합>

#### 전략적 목적 H. 1. 국가기구와 정부조직을 설치, 강화한다.

##### 행동강령

##### 정부는

- 여성지위향상책임이 총리 산하 등 정부의 최고위수준에서 다루어지도록 한다.
- 국가기구를 설립하고, 여성의 최고위직 진출을 위해 기존의 기구를 강화한다. 명확한 권위와 책임이 있어야 한다. 재정이 충분해야 하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고 입법에 참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의사소통을 하고, 조정하며, 수행을 모니터한다.
- 여성관련 통계 분석을 위해 직원의 훈련을 제공한다.
- 정부의 정책에 관한 정보를 초기에 수집할 수 있는 절차를 확립한다.
- 정기적으로 입법기관에 여성문제를 중심화하기 위한 노력에 관해 보고한다.
- 남녀평등을 위해 다양한 공적, 사적기관들의 참여를 격려, 지원한다.

#### 전략적 목적 H. 2. 모든 입법, 공공정책, 프로그램과 사업에 여성의 관점 통합

##### 행동강령

##### 정부는

- 정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정책의 남녀에 대한 영향이 연구되도록 한다.

##### 국가기구는

- 남녀평등을 위한 정부정책의 형성과 수행을 돕고 적절한 전략과 방법론을 개발하며 여성문제를 중심화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도모한다.
- 정부, 여성연구소, 기업, 언론, 비정부기구, 여성단체와 협력적인 관계를 수립한다.
- 발전과정에 여성의 통합
-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국가, 지역, 국제적 기구와의 직접적 관계수립

- 정부기구에 여성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훈련, 지원

#### 전략적 목적 H. 3. 계획과 평가를 위한 성별 데이터의 정보를 개발, 배포

##### 행동강령

##### 통계청, 정부 및 유엔기관, 연구소는

- 성별 통계 개발
- 여성연구소의 참여 유도
- 모든 통계분야에 여성문제 반영을 위한 전문가 임명
- 모든 형태의 노동과 고용에 관한 총체적 지식 개발 : 자료수집, 측정 등에 있어서 계산
- 남녀의 빈곤측정에 관한 개념과 데이터 수집방법 개선
- 보건 서비스에 관한 데이터 개선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성별 연령별 데이터의 수집
- 장애인 참여에 대한 개념, 데이터 수집방법 개선

##### 정부는

- 여성관련 통계의 정기적 발간
- 공적 통계체계 및 여성문제 반영에 대한 재검토
- 공사분야의 고위정책결정과정에서의 남녀의 수 등 사회에서의 권력과 영향력의 공유에 관한 수량적 연구 개발 지원

##### 유엔은

- 여성의 인권,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방법의 개발 개선
- 통계 '세계여성'을 5년 간격으로 준비배포
- 국가의 여성정책개발지원
- 유엔사무국의 통계국과 INSTRAW의 자료가 여성지위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잘 전달되도록 유도.

행동강령

# 여성과 미디어

강 경 화 세종대 교수

북경세계여성대회 정부간 GO회의가 만들어 낸 행동강령에서 미디어는 여타 핵심분야에 비해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NGO포럼에서 여성과 인류의 미래를 규정하는 세계적 흐름이라는 대주제하에 진행된 24번의 전체회의에서 개막식과 지역별 미래전망, UN속의 여성, NGO의 역할, 제도적 장치 등의 전략적 문제를 다룬 13번의 회기를 제외한 11번의 회의 가운데 두차례의 Midia, Culture & Communication이라는 주제로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는 전체회의를 기획한 NGO faciliating Committee의 여성지도자들이 여성의 미래와 관련하여 미디어의 역할과 문제점에 큰 비중을 두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이슈로서의 미디어의 비중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 극복을 위해 제시된 북경행동강령의 내용의 빈약함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남녀가 평등한 세상의 구현 여부가 정보와 이미지의 전달자이며 창조자, 사회적 실제의 규정자인 미디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미디어의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인식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오늘날 가속되고 있는 다국적 미디어 기업이 세계적 지배 속에서 점점 더 심화하고 있는 미디어의 상업주의적 소비주의적 문화제국주의적 속성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무기력감 사이에서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정부들과 시민단체들이 느끼는 딜레마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평등과 발전과 평화를 위해 언론자유는 책임있는 행사가 필요하고 요구되는 반면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미디어에게 강요할 수도 없다는 현실인식이다.

미디어의 협조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나이로비 전략과 미디어 문제에 대해 빈약한 북경 행동강령과의 차이는 지난 십년 동안 언론자유라는 민주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방패삼아 기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미디어 체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그 현실인식이 그만큼 뚜렷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북경에서 행동강령이 마지막으로 손질될 때도 작용하며 초안에는 없었던 "언론자유와 일치하는 조건하에"라는 단서가 곳곳에 첨가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제약점을 안은 채 행동강령은 최근 미디어의 기습적 진보속에 내포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 종사하는 여성은 아직도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국가, 국제 차원의 미디어 기관들이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여성상이 미디어에 의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미디어에 대한 여성의 참여와 접근을 확대시키고 미디어가 표출하는 여성상이 기존의 왜곡과 편협한 정형을 벗어나서 보다 긍정적이고 균형된 것이 되도록 정부에 대해 각국의 그리고 국제적 미디어 기관과 광고업계에 대해, 그리고 시민단체들에 대해 몇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에서 미디어에 대한 직접적 요구는 1) 모든 단체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2)균형 있고 다양한 여성상의 전달과 여성을 비하하는 폭력이나 외설물 등을 통제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있어서의 남녀의 평등한 참여를 돈독히 하기 위한 윤리규정이나 자율규제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정부와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1) 미디어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회의 확대 2) 관련연구 지원 3) 미디어 관련 공공기구 참여에 있어서의 남녀 균형유지 4) 여성을 위한 또는 여성에 의한 프로그램 확대 격려 5) 미디어의 자유보장 6) 행동강령을 홍보하고 여성의 상품화를 지양하도록 미디어와 광고업계를 격려할 것. 7) 미디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gender sensitivity 훈련프로그램 마련 8) 그리고 폭력물과 외설물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기구 등의 국가적 장치에 대해서는 1) 새로운 통신기술을 이용한 미디어 소비용 정보의 창출을 위한 여성의 교육과 훈련 2) 여성의 민주화 과정 참여확대 추진 3) 미디어 업계의 자율규제 장치 마련에 여성의 참여 격려, 그리고 NGO와 전문단체에 대해서는 1) 지속적인 미디어 감시운동 2)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여성소비자 훈련 3) 유관단체들 사이의 유대형성(networking) 4) 남녀평등에 입각한 기사분담을 위한 캠페인 5) 여성의 다양한 역할과 사회적 기여와 여성지도자 그리고 여성의 인권에 대한 홍보 활동 6) 미디어 분석 전문가 양성 7)대안적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 가운데 NGO포럼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무절제한 상업주의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언론자유는 우리의 미디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특히 강조되